

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자료제공 지침

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자료제공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
2020년 6월 17일
보건복지부 장관

1.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

- “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” 마이크로데이터 자료 제공 과정에서, 통계작성기관(보건복지부)의 형식화된 별도 승인 절차로 인해 통지 지연 등의 문제 발생
- 이에 따라 위탁기관(한국한의학진흥원) 내부심의를 통해 자료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, 이와 관련된 사항을 차후 종합 보고 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개선

2. 참고 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통계법 제3조(정의), 제29조의2(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) 등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다. 합 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라 기 타
- 신구조문 대비표 : 별도 첨부
 -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「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자료제공 지침」 일부개정

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자료제공 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6호 중 “위탁기관관”을 “위탁기관이란”으로 하고, “적성 및 공개 사무”를 “작성, 공개 및 제공 업무”로 한다.

제4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경우 이용자의 이메일을 통해 제공할 수 있으며, 해당 사유를 이용자에게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그 결과를 통계작성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 통계작성기관은 위탁부서의 장에게 이용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 부터 14일 이내에”를 삭제한다.

제5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위탁기관의 장은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청구와 이에 대한 이용 승인, 제공 결과를 종합하여 통계작성기관으로 매 반기별 보고 하여야 한다.

제6항제2항 중 “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계작성 기관으로 이를 제출하고”를 “이의신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”로 한다.

